

# 무역위원회,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 국내산업 피해 판정

전양돈인들과 국내 육가공업체 종사자들이 6개월간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던 수입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조사결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이로서 지난해 7월 24일 본회와 육가공협회가 공동으로 신청한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한 산업영향 조사결과는 우리측의 판정승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와 한국육가공협회가 공동 신청한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조사결과를 발표, 돼지고기통조림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통조림 생산과 돼지고기 수요의 감소 및 가격하락 등이 초래되어 국내통조림산업 및 양돈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60일 이내에 한시적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은 87년 7월 1일 수입자유화되어 그해에 566톤이 수입된 후 88년에는 전년대비 193%가 증가한 1,660톤이, 89년 8월까지의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한 1,758톤이 수입되어 수입이 급증했다.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수입돼지고기통조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87년 14.6%에서 '89년에는 44.2%로 증가한



반면, 국내 돼지고기통조림산업의 생산과 가동율은 '89년 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9%와 17.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가격도 수입자유화 전에 비해 13% 하락하고, '89년에는 적자로 되는 등 국내 육가공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밖에도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급증은 영세한 양돈산업에도 피해를 끼쳐 돼지고기의 수요감소는 물론, 국내 통조림 생산의 감소로 돼지 수급조절이 어려워져 돼지가격의 하락이 가속화 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업피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 영세

한 양돈산업의 보호와 향후 식생활의 고급화 추세와 관련한 식료품의 자급체제 확립을 위한 통조림산업의 육성 필요성 ▲ 양돈산업과 통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간 정부와 업계의 지구노력과 향후대책 ▲ 소비자 보호와 국제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했다고 한다.

이번 산업피해 판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는 ▲ 수입자·생산자간의 자율적인 수입물량의 조정·권고 ▲ 관세율의 조정 ▲ 수입수량 제한 등이 있는데,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구제방안과 아울러 양돈산업 및 통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도 동시에 강구하여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의 구제방안 건의는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본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해 7월 24일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값싼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돼지고기통조림산업과 양돈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제32조에 의한 산업영향조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동년 8월 23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조사단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해 4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였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수입돼지고기통조림의 국내산업 피해판정은 정부가 사전 대책도 없이 외국의 압력에 밀려 “우선 수입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수입개방을 한 정부의 단견을 적나라하게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 보존기간이 길어 일본에서조차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부터 수입개방하고, 15년이 경과한 후 개방한 점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육가공제품중 수요량이 가장 많은 소시지가 사전에 아무런 보완대책없이

또다시 수입개방 된 것으로 보면, 소시지도 돼지고기통조림의 전철을 밟을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보사부가 소시지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 식품에 표시하던 제조일을 삭제하고 유통기간만 명시토록 함으로써 소시지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유통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시지도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판정이 내려진만큼 실제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예를들면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관세율 대폭 상향 조정(현행 30%에서 80~100%)과 함께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내 양돈산업 및 육가공산업이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가공원료육의 생산단가를 높이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과 함께 육가공공장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하겠다. 소시지의 경우도 돼지고기통조림에서처럼 소를 잃고 난후 외양간을 고칠려고 하지 말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또한 국내 육가공업계와 양돈업계는 앞으로도 계속 육가공제품의 수입실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위원회에서 “피해”판정이 내려지는데는 바쁜 중에도 동문서주하며 각종 자료준비를 한 분들과 사회의 여론이 큰 뒷받침이 되었다. <취재: 김동성>